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44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 김수흥·김주영·최인호

김교흥 • 기동민 • 이명수

김민석 · 안규백 · 맹성규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u>까지 다음 각 2027년 12월 31일-----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 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 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u>2027년</u>	12월	31일	<u>]</u>	
3					
		<u>202</u>	7년	12월	31일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